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522
----------	------

2026년 3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안일 : 2026년 2월 9일
다. 회부일 : 2026년 2월 12일
라. 상정일 :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3월 5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경환 재무국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25. 12. 10.)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평가항목의 세부항목명과 평가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평가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의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를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로 변경(안 별표 1)

- 평가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은 다른 평가항목에서 적용하는 순위 간 편차의 1/2을 적용하는 규정 삭제(안 별표2)
- 평가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의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의 배점을 6점에서 8점으로 하고,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의 배점은 3점에서 1점으로 변경(안 별표 1 및 안 별표 2)
- 평가항목 5(금고업무 관리능력)의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을 라.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으로 세부항목명 변경(안 별표 1 및 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평가 제외대상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26. 1. 15.~1. 23.) 결과: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하 “행안부 예규”)의 개정(제346호, 2025. 12. 10.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금고 지정 과정에서의 예금 금리 평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이번 개정은 서울시의 자금 운용 구조에 맞춰 배점 체계를 조정하고, 금고 선정의 변별력을 강화하여 재정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임.
 - 비중이 큰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배점을 상향하고, 금리 경쟁을 유도(금융기관 간 점수 격차를 완화하던 ‘편차 축소 규정’ 삭제)하여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됨.
 - 또한, 금고별 업무 범위와 역할 차이를 반영하여 수납시스템 평가 항목에서 특정 시스템 명칭을 배제하는 등 평가 항목 명칭을 정비하여 1·2금고 간 평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최근 자금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평균잔액은 약 4조 3,705 억원이며, 이 중 수시입출금식 예금¹⁾ 비중이 약 73.2%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대규모 유동성 자산의 수익률 제고는 시 세입 확충의 관건이라 할 수 있음.

1)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서울시 금고 운영상 일반 지출을 위한 공금예금과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업 MMDA(Money Market Designated Account)'를 통합하여 일컫는 명칭으로, 시장 금리를 적용받으면서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금융상품의 특성을 가짐.

- 따라서 금리 경쟁을 제한하던 규정을 개정하여 재정 자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간 시금고 평균잔액 및 이자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구 분	평균잔액 (백만원)	예치율 (%)	이자 (백만원)
2025년	계	4,370,556	100	155,088
	공금예금	253,790	5.8	5,038
	정기예금	1,172,436	26.8	45,761
	기업MMDA	2,944,330	67.4	104,289
2024년	계	4,027,568	100	163,843
	공금예금	274,468	6.8	7,480
	정기예금	1,701,678	42.3	74,029
	기업MMDA	2,051,422	50.9	82,334
2023년	계	6,281,863	100	256,626
	공금예금	653,551	10.4	25,152
	정기예금	3,719,336	59.2	161,962
	기업MMDA	1,908,976	30.4	69,512

※ 출처: 서울시 재무국 제출자료

나. 세부 내용 검토

1) 금리 평가 항목의 명칭 변경 및 배점 조정

- 본 개정안 별표 1의 평가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중 평가 세부 항목 나에서 기존 “공금예금 적용금리”를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개정 예규의 용어 체계를 따르면서, 운영 실무상 성격이 유사한 공금예금과 기업MMDA²⁾를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2) 기업MMDA(Money Market Designated Account)는 시장 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하나로, 기업이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자금을 입출금 자유를 누리며 단기간 예치하여 운용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개발된 금융 상품임.

- 배점 조정과 관련하여, 수시입출금식 예금 배점을 상향(6점 → 8점)하고,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배점을 축소(3점 → 1점)한 조치는 서울시 자금 운용 데이터 분석 결과에 근거한 합리적 설계로 사료됨.

〈명칭 변경 및 배점 조정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금고정 평가항목 및 배점 [준제/조제항 관련]			[별표 1]금고정 평가항목 및 배점 [준제/조제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2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20
	가. (생략)	(7)		가. (현행과 같음)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8)
	다. (생략)	(4)		다. (현행과 같음)	(4)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3)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1)

- 2025년 기준 기업MMDA와 공금예금을 통합한 수시입출금식 자산의 비중은 전체 자산의 약 7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자 수익 측면에서도 전체 수익의 약 70.5%(1,093억 원)³⁾임.
- 반면,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항목의 경우, 만기 후 초기 3개월 이내에만 일정 수준의 금리가 보장될 뿐, 그 이후 기간에는 당초 이율의 20~30% 수준으로 금리가 급락하는 금리 구조⁴⁾를 가지고 있음.
- 2025년 기준 만기경과 이자 수입⁵⁾은 약 108억 원으로, 전체 이자 수입의 약 6.9%에 불과하며, 만기 자산은 지출하거나 재예치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해당 항목의 배점 축소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2025년 자금운용 현황 기준, 전체 이자 수익 155,088백만원 중 수시입출금식 예금(공금예금 5,038백만원, 기업MMDA 104,289백만원)의 수익 합계는 109,327백만원임. 이를 전체 이자 수익 대비 비중으로 환산하면 약 70.493%에 해당함. (출처: 서울시 재무국 제출자료)

4) 금고별 약정 조건에 따르면 만기 후 일정 기간(3~6개월, 6개월 초과) 경과 시 당초 약정 이율 대비 수익성이 단계적으로 급격히 저하되는 체감형 금리 구조를 가짐. (출처: 서울시 재무국 제출자료)

5) 2025년 정기예금 만기경과 이후 이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1금고 1,126백만 원과 2금고 9,685백만 원을 합산한 총 이자액은 10,811백만 원(약 108억 원)임. (출처: 서울시 재무국 제출자료)

〈정기예금 만기경과 이후 이자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		2024		2023	
	1금고	2금고	1금고	2금고	1금고	2금고
이자액	1,126	9,685	4,567	15,604	15,754	7,976

※ 출처: 서울시 교통실 제출자료(2026.2.12.)

- 다만, 금고 선정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예규상 표준 배점(17점)을 상회하는 기초를 유지하는 방향⁶⁾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배점 조정의 재량⁷⁾이 부여된 현행 예규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개별 배점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실익이 낮은 평가 항목을 유사 지표와 통합하는 등 평가 체계를 보다 간소화하는 방안⁸⁾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금리 배점 관련 예규·조례안 대비표〉

행정안전부 예규			조례 개정(안)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17			20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6)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8)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1)	

6) 서울시가 그간 금리 항목 배점을 예규상 표준 배점보다 높은 배점으로 운영해 온 것은, 세부 항목 간 배점 조정이 금지되었던 이전 예규 체제에서 금리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동조례 제정 당시 별도 항목을 신설하여 총점을 보완해 온 운영상의 배경에 따른 것임.

※ 당시 행안부 예규(제244호, 2009. 6. 10. 시행)에 따르면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이라고 규정됨. 그래서 행안부 예규에 없는 라목(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을 추가하여 금리 배점 총점을 상향하였음.(2010. 1. 7. 동조례 제정·시행)

7) 최신 개정된 행안부 예규(제346호, 2025. 12. 10. 시행)에 따르면 ‘항목 6(기타사항)의 배점(11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세부항목 간 배점 조정의 재량권을 처음으로 부여함.

결과적으로 지점 수나 자산 규모 등 인프라가 우세하여 다른 정량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한 대형 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측면이 있었음.

- 편차 축소 규정 삭제 시 실질 점수 격차가 확대되어 평가의 변별력이 대폭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경쟁력있는 금리 제시 및 내실 있는 지역사회 공헌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역사회 기여실적’에 적용되던 편차 축소 규정의 삭제는 단순한 변별력 제고를 넘어 그간 시정에 협력하며 지역 공헌에 힘써온 금융기관의 활동 실적을 적정하게 반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아울러 차기 금고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이 시정 발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제가 될 것으로 보임.
- 결과적으로 본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지역 환원을 이끌어내어 시정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이러한 평가 항목 순위 간 편차 확대가 신규 금융기관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평가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엄정한 심사 운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수납시스템 명칭 정비

- 본 개정안 별표 1의 평가항목 4(금고업무 관리능력) 중 평가 세부항목 2의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에서 특정 시스템 명칭인 ‘OCR센터, ETAX 등’을 삭제하고,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으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은 금고 종류(1금고·2금고)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공통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수납시스템 명칭 정비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금고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조제항 관련)			[별표 1] 금고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조제항 관련)		
		28			2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 운영능력 및 계획	(6) (8) (8)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수납시스템 구축· 운영능력 및 계획	(6) (8) (8) (6)

- 기존 OCR센터, ETAX 등은 1금고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시스템인바, 이를 평가 항목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1금고와 2금고 간 평가의 형평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음.
- 2금고의 경우 해당 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하기보다 1금고 시스템에 연계하는 수준임을 고려할 때, 명칭 정비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 하려는 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행안부 예규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서울시 재정 자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수익성 있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최근 서울시가 금고 운영 이래 최초로 약정 금리를 공개*(2026. 1. 8.)하여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 데 이어, 수익 기여도가 높은 항목의 배점을 상향 하고 '인위적 점수 보정'을 삭제하여, 재정 수익 확대를 도모하려는 개정 방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금고 약정금리 공고〉

(2025. 12. 9. 기준, 단위 : %)

구 분	기본현황				약정에 따른 적용금리							
	은행명	취급회계	약 정 개시일	약 정 만료일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예금		대출금리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공금 예금	기업 MMDA	일시 차입	지방채 인수
1금고	신한은행	일반회계 특별회계	'23.1.1.	'26.12.31.	2.39	2.70	3.07	3.45	2.52	3.54	3.54	4.59
2금고	신한은행	기금	'23.1.1.	'26.12.31.	2.32	2.63	2.92	3.20	2.02	3.04	4.08	5.34

- 특히 순위 간 편차의 1/2 적용 규정의 삭제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시 세입 확충 및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경쟁 유도를 통한 재정 수익 확보와 지역사회 환원 활성화가 조화를 이루며,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진 공익적 평가항목들이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지 않도록 향후 금고 지정 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유지와 선정 이후의 약정 이행 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3522
-----------	------

제출년월일 : 2026년 2월 9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25. 12. 10.)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평가항목의 세부항목명과 평가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평가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의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를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로 변경(안 별표 1)
- 나. 평가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은 다른 평가항목에서 적용하는 순위 간 편차의 1/2을 적용하는 규정 삭제(안 별표2)
- 다. 평가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의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의 배점을 6점에서 8점으로 하고,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의 배점은 3점에서 1점으로 변경(안 별표 1 및 안 별표 2)
- 라. 평가항목 5(금고업무 관리능력)의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을 라.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으로 세부항목명 변경(안 별표 1 및 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평가 제외대상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 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6. 1. 15.~1. 23.)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재무국 재무과 안수현(☎2133-3228)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제1항 관련)

I.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1- 가,나,의 경우는 평가 세세부 항목별)로 대상 금융기관이 부여받는 최소 점수는 배점상한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배점상한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서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해야 한다.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
- 평가
 - ※ 단,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흥,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8점)

- 공금예금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1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 설치 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과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8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점)

- OCR센터, ETAX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6. 그 밖에 사항 (2점)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2점)

- 금융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 실적,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II-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제조제항 관련)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제조제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 내 외 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 정 성		25	1. 금융기관의 대 내 외 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 정 성		25
	가. (생략) 나. (생략)	(8) (17)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8) (17)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2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20
	가. (생략)	(7)		가. (현행과 같음)	(7)
	나. <u>공금예금 적용금리</u>	(6)		나. <u>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u>	(8)
	다. (생략)	(4)		다. (현행과 같음)	(4)
	라. <u>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u>	(3)		라. <u>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u>	(1)
3. 시민의 이 용 편의성		18	3. 시민의 이 용 편의성		18
	가. (생략)	(7)		가. (현행과 같음)	(7)
	나. (생략) 다. (생략)	(5) (6)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5)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8
	가. (생략)	(6)		가. (현행과 같음)	(6)
	나. (생략)	(8)		나. (현행과 같음)	(8)
	다. (생략)	(8)		다. (현행과 같음)	(8)
	라. <u>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 운영능력 및 계획</u>	(6)		라. <u>수납시스템 구축· 운영능력 및 계획</u>	(6)
5. 지역 사회 기 여 및 시 와 의 협 력 사 업		7	5. 지역 사회 기 여 및 시 와 의 협 력 사 업		7
	가. (생략) 나. (생략)	(5) (2)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5) (2)
6. 그 밖에 사항		2	6. 그 밖에 사항		2
	가. (생략)	(2)		가. (현행과 같음)	(2)

현 행	개정(안)
<p>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p> <p>4. 금고업무 관리능력 (28점)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 · 운영능력 및 계획 (6점) · OCR센터, ETAX 등 수납시스템 구축 ·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p> <p>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생략) 나. (생략)</p> <p>6. 그 밖에 사항 (2점) 가. (생략) ※ (생략)</p>	<p>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p> <p>4. 금고업무 관리능력 (28점)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점) · ----- ----- -----</p> <p>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p> <p>6. 그 밖에 사항 (2점) 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개정('25. 12. 10.)사항을 반영하고, 우리시 금고 운영 현황에 맞게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재무국 재무과 안수현(02-2133-3228)